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1일,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9.12.)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2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교 의원)

「산림조합법」 32조에 따르면 대의원은 다른 조합 임직원을 겸직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겸직금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함.

또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이 필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재금)

가.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제외

현행법에서는 대의원이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

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의원이 조합의 정관변경, 해산 또는 분할, 합병, 조합원의 제명 등 중요한 운영사항을 결정하는 대의원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맡은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충돌 방지 등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현행법상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인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대의원 겸직금지의 입법취지가 이해충돌 방지 등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겸직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겸직금지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고, 현행법 제41조제4항에서는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대의원의 겸직금지 목적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다만, 개정안의 법문이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능성이 낮으므로 해당 문구를 “(다른 법률에 따른 협

동조합을 포함하되,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다)”로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나.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현행법에서는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법 시행령 제11조의9에서는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이란 조합에서 우선출자증권을 우선출자자로부터 매입하여 소각하는 절차로, 이러한 매입소각은 조합의 자기자본의 감소 또는 운영재원의 조달(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인한 당기 운영 부담 증가 등을 초래하여 경영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됨.

이와 같이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은 자기자본 규모의 변동 등을 초래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